

-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김태호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151호

다. 제출일자 : 2018. 10. 8.

라. 회부일자 : 2018. 10. 29.

2. 제안사유

-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
-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함
- 따라서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규정하도록 함
(안 제1조)

나.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도록 함(안 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철도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예고기간 : 2018.11.1.~11.8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)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“도시철도 건설사업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“도시철도 운영”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도시철도법」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제2항¹⁾ 등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”의 설치 목적을 현재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 특별회계의 실제 사용 현실에 맞게 도시철도 운영 관련 사항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
- 서울시는 그 동안 동 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운영 예산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·집행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
- 또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현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 관련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던 사항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1) 제126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